

일반인사교류 배점 기준표(제22조제2항 관련)

인사교류 기준(100점)을 마련하여 시·도와의 인사교류를 위해 제1평정 요소 및 제2평정 요소를 구분하여 산정함

○ 제1평정 요소(60점)

항목(점수)	배 점 내 용
교류 조건 충족여부 (30)	-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경과한 경우
초과기간 (30)	- 중앙119구조본부에서 2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2점씩 누적 가산

○ 제2평정 요소(40점)

항목(점수)	배 점 내 용
근무성적 (10)	- 최근 2회 평균 "수"(10점), "우"(6점), "양"(2점)
전문자격 (10)	- 5개 이상 보유(10점), 4개 보유(8점), 3개 보유(6점), 2개 이하(4점) ※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별표 1, 2, 3에 따른 자격으로 한정
교육훈련 (10)	- 5회 이상 수료(10점), 4회 수료(8점), 3회 수료(6점), 2회 수료(4점) ※ 본부에서 수립·추진하는 내부위탁교육을 모두 포함하며, 3일 이상 과정에 한함
부양가족 (10)	- 6인 이상(10점), 5인(8점), 4인(6점), 3인(4점), 2인(2점) ※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산정